

6. 조선후기 순천부의 재정규모

이상에서 조선시대 순천지역의 재정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러면 순천지역에서 거두어지는 재정의 규모는 얼마나 되었을까. 이는 자료의 미비로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시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1794년에 작성된 『투역실총』을 통해 조선 후기 순천부의 재정규모를 알아보려고 한다. 『투역실총』에는 중앙과 각 영문에 납부하는 재정과 함께 관용비가 기록되어 있다.

경사상납	
관 청	상납물
호 조(戶 曹)	전세미(田稅米) 2,652섬 태(太) 808섬 삼수양미(三手糧米) 952섬 궁방둔세미(宮房屯稅米) 868섬 · 전(錢) 1,105냥 묘향탄위결전(墓香炭位結錢) 382냥 무세전(巫稅錢) 63냥 장세전(匠稅錢) 8냥 노비공전(奴婢貢錢) 164냥
선혜청(宣惠廳)	대동미(大同米) 5,271섬 태(太) 106섬
균역청(均役廳)	면세미(免稅米) 90섬 태(太) 17섬 결전(結錢) 4,542냥 어염세전(魚鹽稅錢) 2,175냥 선무전(選武錢) 376냥
병 조(兵 曹)	기병번전(騎兵番錢) 370냥 금보전(禁保錢) 1,120냥 충순위번전(忠順衛番錢) 14냥
훈련도감(訓練都監)	포보목(砲保木) 6동(同) 13필 · 잡비전 107냥 둔세전(屯稅錢) 336냥 보미(保米) 38섬
금위영(禁衛營)	보미 288섬
어영청(御營廳)	보전(保錢) 681냥

경사상납	
관 청	상납물
총융청(摠戎廳)	의승번전(義僧番錢) 41냥
수어청(守御廳)	의승번전 265냥
장악원(掌樂院)	악공보미(樂工保米) 19섬
사복시(司僕寺)	제원번전(諸員番錢) 135냥
충익부(忠翊府)	충익위번전(忠翊衛番錢) 46냥
내수사(內需司)	둔세미(屯稅米) 135섬 · 노비공전(奴婢貢錢) 10냥
경기청(京畿廳)	역복미(驛復米) 3섬
공 조(工 曹)	장보전(匠保錢) 592냥
중추부(中樞府)	약채목(藥債木) 8필

영진상납	
영 · 진	상납물
감 영(監 營)	제번전(除番錢) 54냥 약재배지보전(藥材陪持保錢) 56냥 포세전(浦稅錢) 1,108냥 모군번전(募軍番錢) 632냥 고모(羔毛) 11냥 죽력(竹瀝) 1말 천문동(天門冬) 2근 길경(桔梗) 2근
통 영(統 營)	전죽(箭竹) 60부 잡미전 15냥
병 영(兵 營)	신선번전(新選番錢) 197냥 수용군번전(需用軍番錢) 67냥 전죽(箭竹) 30부 · 잡미전 15냥 추근피(楸根皮) 20근 치우(雉羽) 600개 궁목(弓木) 22토(吐) 적작약(赤芍藥) 2근 당귀(當歸) 2근 모과(木果) 2근

경사상납	
영·진	상납물
좌수영(左水營)	정병번전(正兵番錢) 1,828냥 수용군번전 838냥 수군번전(水軍番錢) 1,854냥 고초가미(藁草價米) 11섬
전영진(前營鎭)	수미(需米) 85섬 생물가미(生物價米) 65섬 시탄가진(柴炭價錢) 351냥 치계가진(雉鷄價錢) 60냥 훈조(熏造) 8말 염(鹽) 9말 진유(眞油) 3말 6되 생강(生薑) 3말 6되 감괵(甘藷) 72속 수리포진가진(修理鋪陳價錢) 90냥 찬가진(饌價錢) 44냥 서진고가진(西眞瓜價錢) 25냥 군수전(軍需錢) 240냥
방답진(防踏鎭)	정병번전 1,278냥 수군번전 760냥
고돌산진(古突山鎭)	정병번전 269냥
녹도진(鹿島鎭)	정병번전 209냥
법성진(法聖鎭)	조군번전(漕軍番錢) 92냥

순천부 관용비	
수미(需米) 397섬 사객지공미(使客支供米) 25섬 아록미(衙祿米) 36섬 태(太) 7섬 치계시거탄가미(雉鷄柴炭價米) 408섬 생물가미(生物價米) 149섬 장세전(場稅錢) 273냥	사색보전(四色保錢) 273냥 초혜(草鞋) 45족 조소(條所) 24거리 세승(細繩) 1,200과 마철(馬鐵) 120부 민고미(民庫米) 27섬 · 전(錢) 2,019냥

이상을 통하여 1794년 순천지역에서 거두어지는 총재정액은 돈 2만 5,418냥, 쌀 1만 1,519섬, 콩 938섬, 포목 6동 13필이었다. 그리고 고모, 족력, 천문동, 길경, 전죽, 추근피, 치우, 궁목, 적작약, 당귀, 모과, 훈조, 염, 진유, 생강, 감괵, 초혜, 조소, 세승, 마철 등의 현물도 징수되었다.

이들 재화는 호조, 선혜청, 균역청, 병조,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장악원, 사복시, 충익부, 내수사, 경기청, 공조, 중추부 등의 중앙관청에 납부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감영, 통영, 병영, 좌수영, 전영, 방답진, 고돌산진, 녹도진, 법성진 등의 영문이나 진에도 납

부되었고 순천의 관용비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경비가 거두어지는 명목은 전세, 삼수미, 둔 전세, 무녀세, 장인세, 노비 신공세, 대동미, 균역세(결전·해세·선무군관세), 균역가, 예목, 포구세, 영문 복정, 수령 봉름, 향공가, 관물, 시장세, 민고세이다. 이러한 명목의 금액을 순천의 지주, 농민, 상인, 수공업자, 어민, 승려 등이 부담하였던 것이다.

참고자료

- 고석규, 「16·17세기 공납제 개혁의 방향」, 한국사론』12, 1985.
김덕진, 「조선후기 지방관청의 민고 설립과 운영」, 역사학보』133, 1992.
김덕진, 「조선후기 전라도 순천부의 잡역세 운용과 조달」, 령상사학』7·8, 1992.
김덕진, 「조선시대 지방관영지소의 운영과 변천」, 역사학연구』12, 1993.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1, 일조각, 1994.
김용섭, 『한국근대농업사연구』상, 일조각, 1984.
박광성, 「균역법시행 이후의 양역에 대하여」, 령곡논총』3, 1972.
박광성, 「조선후기의 환곡제도에 대하여」, 『인천교대논문집』7, 1973.
이재룡, 『조선초기 사회구조연구』, 일조각, 1984.
조원래, 「18세기초 순천부의 지방행정동태」, 『탐도문화연구』1, 1985.
차문섭, 「임란이후의 양역과 균역법의 성립」, 『사학연구』10·11, 1961.
허상만, 「순천지역 농업발달의 사적 고찰」, 『탐도문화연구』1, 1985.
최완기, 『조선후기 선운업사연구』, 일조각, 1988.
田川孝二, 『李朝貢納制의 研究』.